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91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 박해철·임미애·김정호

이광희 · 송옥주 · 김태선

박 정・전재수・전용기

김남희 • 진성준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 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 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 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 「국민 평생 직 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7호). 「진 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주한미 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

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제1조(목적)
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	
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	
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	
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u>근로자</u>	<u>노동자</u>
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제2조(정의)
소속 한국인 <u>근로자</u> "란 다음	<u>노동자</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	1
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	

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u>근로자</u> 2. (생 략)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주한 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u>근로자</u>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u>근로자</u>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있다.

② · ③ (생 략)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이 제 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u>근로자</u>는 지원금 결

<u>노동자</u>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u>노동자</u>
<u></u> -
<u>동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u>노동자</u>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노동자

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